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08
----------	-----

제출연월일 : 2014. 0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동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과태료부과·징수)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통령령 제41215호(2009.4.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가 신설되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제정·시행되어 상위법령에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 예고(2014.03.04. ~ 2014.03.24.) 결과, 의견 없음
- (2) 사전 규제검토 : 해당사항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
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41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리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09. 4. 6)

[별표 8] <개정 2009.6.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p>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법 제41조제1항 제1호</p>	<p>300</p>	<p>300</p>	<p>300</p>
<p>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법 제41조제1항제2호</p>	<p>300</p>	<p>300</p>	<p>300</p>
<p>다.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이 아닌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자</p>	<p>법 제41조제1항제3호</p>			
<p>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p>				
<p>가)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p>		<p>50</p>	<p>100</p>	<p>200</p>
<p>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p>		<p>30</p>	<p>50</p>	<p>100</p>
<p>다)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p>		<p>10</p>	<p>30</p>	<p>50</p>
<p>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p>		<p>5</p>	<p>10</p>	<p>30</p>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2)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가) 영업장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	50	100	200
나) 영업장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목욕장	30	50	100
3)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100	200	300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3)에 따른 업종은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가)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0	50	10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특별자치도·시·군·구의	3	5	10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매장만 해당한다)			
5)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한 경우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가)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7)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50	100	200
라.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 제1호	50	70	100
마.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4호	50	150	300
바.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5호	50	100	300
사.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6호	50	100	300
아.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7호	200	250	300
자. 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2호	30	50	100
차. 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품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8호	100	200	300
카. 법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고품연료제품을 공급하는 자	법 제41조제1항제9호	200	250	300
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10호			
1) 재활용지정사업자		200	250	300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파.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3호	50	70	100

□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내용 비교

상위법	우리군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신설 2009. 4. 6)</p>	<p>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0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과 그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p>
<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제41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과태료처분통지서(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처분이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과태료납부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피처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중 예치금 부과대상 제조·수입업자, 부담금 부과대상 제도·수입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위반사항을 통보받거나, 관할 지방환경청장 협조하에 위반사항을 직접 확인한 후 과태료처분 통지를 하여야 한다</p>

상위법	우리군 조례
<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p>	<p>제6조(과태료 납부기간)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동기간내에 과태료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별지 제4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p> <p>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피처분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과태료수납부(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p>